

의안번호	제 1 호
의결년월일	2004. 2.

의 견 청 취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(안)

제 출 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2. 10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1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○서포면 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남해안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용량 700m³/일의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서포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결정(안)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증감		
신설	하 수 도 (하수종말처리장)	서포면 구평리 149번지일원	-	7,430	7,430	-	

3. 법적근거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

서포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

□. 서포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조서

가. 하수도 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증감		
신설	하 수 도 (하수종말처리장)	서포면 구평리 149번지일원	-	7,430	7,430	-	

나. 하수도 결정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결정내용	결 정 사 유
①	하 수 도 (하수종말처리장)	신설 (7,430m ²)	·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결정사항